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04
----------	-----

2023. 6. 23.(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지현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3년 5월 31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1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6월 13일

-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지현 의원)

가. 제안이유

-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을 방지하고, 이를 복원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와 보전활동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의 수질 및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김홍식 수석전문위원)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하천보전 관리방안은 하천의 수생태적 기능 향상과 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하천주변을 둘러싼 수변림, 습지, 초지 등 치수 및 이수 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내 각 하천의 수질보전활동은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 생태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하천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을 방지하고 이를 복원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와 보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천의 수질 및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참 고

우리 도를 제외한 전국 8개 시·도에서 유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정일	23.3.27	15.2.25	19.10.30	-	-	17.12.29	-	-
시·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정일	16.7.19	-	20.8.10	-	17.7.6	22.9.23	-	-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하천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을 방지하고, 이를 복원하기 위한 도민의 자발적인 환경오염 감시행위와 하천보전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음.

참 고

- 「물환경보전법」 제6조(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조례제정 타시·도 현황** : 강 또는 하천살리기 운동을 범시민 단체 주도 하에 관련사업 진행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는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협력해야 하는 도지사 및 충청도민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4조는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는 도민이나 민간단체에 하천수질보전활동, 하천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등 관련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
- 그 밖의 조문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조례안 예고('23. 6. 2. ~ 6. 8.)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본 조례안은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을 방지하고, 이를 복원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와 보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문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충청북도 내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을 방지하고, 이를 복원하기 위한 도민의 자발적인 환경오염 행위감시와 하천보전 활동을 지원하여 도민의 수질보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제정 이후 수질보전활동에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감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루어져 하천의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태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지사는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박지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4
----------	-----

발의연월일 : 2023년 5월 31일
발 의 자 : 박지현, 이동우, 김종필,
김호경,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1. 제안이유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을 방지하고, 이를 복원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와 보전활동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의 수질 및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나.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다. 협의 : 충청북도 환경산림국 수자원관리과
- 라. 조례안 예고 : 2023. 6. 2. ~ 6. 8. (의회홈페이지 게시 및 예고)

충청북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을 방지하고, 이를 복원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와 보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천 수질보전활동”이란 하천 수질과 수생태계를 보호하고, 오염된 수질 및 파괴된 수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오염행위 감시, 정화 활동 및 이와 관련된 교육 등을 말한다.

2. “민간단체”란 하천 수질보전활동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호하고, 오염된 수질과 파괴된 수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수질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도가 추진하는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채용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도민이나 민간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하천 수질보전활동
2. 하천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하천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4. 하천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연구·조사활동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하천 수질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도민이나 민간단체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6조(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6. 1. 2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

제6조의2(물환경 연구·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대학, 민간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조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

충청북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을 방지하고, 이를 복원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와 보전활동의 지원할 근거 마련

2. 비용발생 요인

- 하천 수질보전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홍보 지원

3. 관련조문

- 안 제4조, 제5조, 제6조

4.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계속사업
- 계속사업인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증감 될수 있음
- 신규사업이 추가될 경우 비용 증감 될수 있음
- 조례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 의거한 비용 추계

나. 추계 결과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자체수립으로 비용 미발생
- 제5조(지원사업)
 - 1) 하천 수질보전활동
 - 금강.한강수계 수중정화활동 및 환경캠페인 : 9,000천원
 - 2) 하천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 5~11월까지 활동 : 56일*40,000원(1일4시간)*2명 ≒ 4,500천원
 - 3) 하천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 교육강사료 : 3회 * 230천원(2시간) ≒ 700천원
 - 홍보비 : 3회 * 1,500천원 = 4,500천원

- 4) 하천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연구·조사활동 : 별도 추진
-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평가 및 포상)

- ▶ 포상금 미지급으로 비용 미발생(표창장 지급)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18,700	18,700	18,700	18,700	18,700	93,500
하천 수질보전활동 비용 지원	9,000	9,000	9,000	9,000	9,000	45,000
배출감시 및 모니터링	4,500	4,500	4,500	4,500	4,500	22,500
수질보전 교육	700	700	700	700	700	3,500
수질보전 홍보	4,500	4,500	4,500	4,500	4,500	22,500
재원 조달	18,700	18,700	18,700	18,700	18,700	93,500
도 비 (자체재원)	18,700	18,700	18,700	18,700	18,700	93,500

※ 현재까지 공익활동으로 유사한 사업을 하고 보조금 지급함.

향후 지원조례 제정으로 민간단체(도민)의 수질보전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경우 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